

1. 개정이유

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*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'23.6.20. 개정, '24.6.21 시행

2. 주요내용

가.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 신설(안 제2조의8, 별지 제1호의4서식)

- 1)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하도록 규정

나. 폐기 농업기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4조의4 제4항)

- 1) 매년 시·도지사가 실시하며, 조사 대상은 경운기, 농용트랙터, 이앙기, 콤바인, 스피드스프레이어, 관리기,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8(농업기계 처리명령)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.

제14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매년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, 실태조사의 대상은 경운기, 농용트랙터, 이앙기, 콤바인, 스피드스프레이어, 관리기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<신설>

※제 호			
농업기계처리명령서			
소유자 (점유 자)	상호명 또는 농업인 성명		
	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	(전화번호 :)	
농업 기계	제조번호		
	기종명		형 식 명
	방치된장소		
	보관된장소		
명 령 사 항		년 월 일까지 위 농업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	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[인]			
○농업기계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업기계를 강제폐기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8(농업기계 처리명령) 특</u> <u>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</u> <u>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</u> <u>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</u> <u>하 같다)은 법 제8조의7제2항의</u> <u>규정에 따라 방치농업기계의 소</u> <u>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</u> <u>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</u> <u>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</u> <u>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</u> <u>다.</u>
제14조의4(농업기계 폐기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의4(농업기계 폐기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시·도지사는 매년 법 제9조의</u> <u>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</u> <u>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해 4</u> <u>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</u> <u>관에게 제출해야 하며, 실태조</u> <u>사의 대상은 경운기, 농용트랙</u> <u>터, 이앙기, 콤바인, 스피드스프</u> <u>레이어, 관리기, 그 밖에 농림축</u> <u>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</u> <u>계로 한다.</u>